



일본의 「보험법」 및 「보험법의시행에따른 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의 성립

I. 들어가며

2008년 5월 30일 일본의 제169회 국회에서는 「보험법」 및 「보험법의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이 성립되고, 2008년 6월 6일에 법률 제56호 및 제57호로 공포되었다.

「보험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단행법화 한 것이며, 공제계약에 더하여 상해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의 신설,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정의 정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우선권의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법의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은 보험법의 시행에 따라,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률의 정비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보험법」 및 「보험법의시행에따른 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의 제정의 경위 및

개요,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과 국회에서의 논의 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배경과 경위

1. 배경

보험이란, “계약에 정하여진 조건에 의한 위험 부담이라는 무형의 상품에 관해서 거래이고, 게다가 그 대가가 다수의 법칙에 근거한 확률계산을 기초로 해서 단체적으로 정하여진 것”¹⁾이라고 정의되거나, 또는 「요소①: 보험료, 요소②: 보험금부, 요소③: ①과②가 대립관계에 서있다는 요소가 담겨져 있고, 또한 요소④: 收支相等原則(보험계약자로부터 각출될 보험료의 총합과 보험자의 보험금부의 총합이 같게 되도록 보험료를 운영한다는 원칙) 및 요소⑤: 금부반대금부

*** -----

1) 倉澤康一郎, “現行保險業法の問題点”, 「保險学雑誌」, 제492호, 日本保險学会, 1981년 3월, 22頁



균등원칙(각각의 보험가입자로부터 각출될 보험료는 당해 보험계약자의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원칙)하에 요소①과 ②의 대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험의 원칙이다.²⁾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동시에 “보편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다.”³⁾라고도 말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은 국민생활에 폭넓게 관련되어 있지만, 보험계약에 관한 일본의 법률은 상법 제2편「상행위」제10장「보험」(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제629조~제683조) 및 제3편「해상」제6장「보험」(해상보험계약/제815조 이하)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고, 게다가 이 규정은 1899년에 제정된 이래, 1911년 일부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100년 가까이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표기도 카타카나와 문어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과거의 이론에 근거한 경직적인 규율은 현대이론에도, 실무에도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사회에 맞는 적절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⁴⁾

2. 외국의 보험법 및 일본의 동향

일본에서 상법이 제정될 즈음, 이미 유럽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강행법규를 포함한

단행법으로서 보험계약법의 제정이 잇따랐다. 이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서 약관을 자유롭게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는 것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를 폭넓게 제약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에 관한 법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1990년대 이후에는 규제완화에 따른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법의 현대화라는 움직임도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상법 제2편「상행위」제10장「보험」에서 손해보험계약과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규정밖에 없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 널리 정착되어 있는 상해·질병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의 정비 필요하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다.⁵⁾

또한 일본에서는 기업보험을 제외한 보험약관의 행정인가제도에 의해서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도모되고 있으나, 규제완화의 진전에 따라서 행정규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관한 사법적인 기본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상법전의 現代語化의 일환으로 보험계약에 관해서 보험자, 피보험자 등의 관계자간의 규정을 현대사회에 맞추기 위해 법무대신에 의해 2006년 9월 6일에 법제심의회에 보험법의 재검토가 논의되었다.

*** -----

2) 山下友信, 『保險法』, 9頁, 有斐閣, 2005년

3) 상계서, 3頁

4) 萩本 修, “新しい保險法の概要”, 『商事法務』, No.1839, 社団法人 商事法務研究会, 2008년 7월25일, 27頁

5) 菱沼誠一, “保險法及び同法整備法の成立”, 参議院Homepage; <http://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books1/20080704/20080704003.pdf>

3. 보험법 및 동법정비법의 성립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제심의회 보험법전문부회는 2006년 11월 1일에 심의를 진행시켜, 다음 해인 2007년 8월 14일에 「보험법개정시안」을 공표하고, Public comment 절차⁶⁾를 거쳐서, 다음 해인 2008년 2월 13일 법제심의회총회에서 「보험법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이 결정되고, 법무대신에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동년 3월 5일, 「보험법안」 및 「보험법의 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안」이 제 169회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법률안은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4월 25일에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동월 30일에 가결되었다.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가결되고, 다음날인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6월 6일에 2008년 법률 제56 및 제57호로 공포되었다.

4. 보험법제정의 의의⁷⁾

보험법은 상법의 문어체에 의한 법문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규율의 내용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1) 규정대상의 확대

보험법에서는 상법에 규정에 있었던 손해보험

과 생명보험이라는 계약유형에 더해서 상해·질병보험에 관한 유형이 추가되었다. 또한, 보험법에서는 보험회사 이외의 각종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제도, 실질적인 계약내용이 보험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현대의 보험실무의 반영

상법의 규정은 1899년 제정 이래 거의 개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의 발달한 보험의 실무와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버렸다. 따라서 보험법은 전반적으로 현대의 보험실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3) 보험계약자의 보호의 강화

보험법에서는 고지의무를 시작으로 한 여러 규정에서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강화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또한, 상법의 규정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절대적 강행규정이 되는 약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임의규정이었으나 보험법은 보험계약자 등 보험가입자측의 관계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규정에 대해서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특약이 금지되도록 하고 있다.

(4) 계약외의 제3자과의 법률관계규정의 정비

보험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보호

*** -----

6) 행정의 정책입안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공모하는 제도로서 2005년 6월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의해서 신설되었다.

7) 山下友信, “新しい保険法—総論的事項および若干の共通事項”, 『Jurist』No.1364, 有斐閣, 2008.10.1, 10頁



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인가 등의 행정규제와 업계 내지는 업자의 자율규제로 상당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었지만,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입법조치가 없으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보험법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선취특권(제22조), 생명보험 등에서의 보험금수취인의 개입권(제60조~62조·제89조~제91조) 등이 그 예이다.

III. 兩법률의 개요

1. 편별구성

보험법은 전5장 96개조로, 제1장「總則」, 제2장「損害保險」, 제3장「生命保險」, 제4장「傷害疾病定額保險」, 제5장「雜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總則」에는 취지규정과 정의규정이, 제5장

「雜則」에는 소멸시효와 보험자의 파산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제1절「成立」, 제2절「效力」, 제3절「保險給付」, 제4절「終了」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또한 제2장「損害保險」에는 제5절「傷害疾病損害保險의 特別」과 제6절「適用除外」가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상해질병보험에 관해서는,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제66조~제94조에 신설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의 정의규정(제2조9호)이 있다. 또한, 손해전보방식의 상해질병보험은 상해질병손해보험계약으로써 손해보험계약의 하나의 종류가 된다(제2조7호).

또한, 정액보험에서 보험금부의 내용으로써, 일정한 금전의 지불뿐만 아니고, 금전이외의 급부(현물급부)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시안에서는 검토가 되었었지만 보류 되었다고 한다.⁸⁾

보험법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I. 법률의 적용범위

공제계약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에 공통하는 계약규정으로 정비한다.

II. 상해질병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 -----

8) 萩本 修, 전게논문, 28頁

III.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

1. 계약체결시의 고지에 관해서 규정을 재검토

- 1)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자로부터 질문 받은 사항에 관해서 고지하면 충분한 것으로 한다.
- 2) 보험모집인에 의한 고지방해 등이 있는 경우의 규정을 신설한다.

2. 보험금의 지불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적정한 보험금의 지불을 위해서 불가결한 조사에 필요한 시간적 유예를 보험자에게 인정하지만, 그 조사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경과한 후에는 보험자가 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3. 편면적 강행규정의 도입

본 법률안의 규정에 의하여도 보험계약자측에 불리한 내용의 합의는 무효로 한다.

IV. 선취특권과 개입권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도산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험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보험금부를 청구할 권리에 관한 특별한 선취특권(先取特權)을 부여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보험계약인 생명보험이나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입권을 규정하고 있다.

V.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수취인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규정의 정비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보험수취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생명보험금수취인의 변경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보험자이고, 유언에 의한 보험수취인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한다.

VI. Moral Risk 방지의 강화

중대사유에 의한 해제의 규정을 신설

VII. 표기의 현대용어화

카타카나와 문어체로 표기되어 있는 상법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히라카나와 구어체의 표기에 의한 보험계약에 관한 새로운 법전을 제정한다.



IV. 주요한 논점과 국회에서의 심의

1. 보험의 정의

보험의 정의는 현행의 상법에도 보험업법에도 없다. 그래서 법제심의회보험부회에서의 심의에서는 보험법안에 보험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도 검토되었으나 결국 보험의 정의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만일 보험의 정의를 좁게 규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보험에 해당함에도 충분한 감시가 행하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는 반면, 정의를 넓게 규정하면, 예를 들어 보험관련과생상품은 보험회사밖에 판매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뉴욕주보험법과 같이 보험계약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곳도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법에 보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고 되었다고 한다.⁹⁾

2. 보험법의 적용범위

현행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 공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융합동조합법」이 동법에 근거한 공제에 관해서 상법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일반적인 계약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

제계약과 보험계약은, 모두 사고나 질병이라고 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수의 사람이 자금을 나누어 내고, 불행히도 그러한 사태를 맞이한 사람에게 보상을 한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제계약에도 상법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또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기본적인 규정도 동일할 것이 요망되고, 공제계약이 폭넓게 보급되어 있음에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계약규정을 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태를 해소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의견을 받아, 보험법은 공제계약중의 계약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험계약과 동등한 내용을 갖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제2조1호).

공제계약을 보험법의 적용범위로 한 것에 대해서 법무성은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한편, “감독규제의 일원화를 노린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법에서는 공제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제단체에 대한 감독의 체제가 이번 법안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다.”¹¹⁾라고 답변하고 있

*** -----

9) 菱沼誠一, 전계논문

10) 萩本 修, 전계논문, 29頁

11) 第169回 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會議録, 第13号, (2008. 5. 29), 18頁

다. 또, 금융청도, 각공제를 감독할 농림수산성, 중소기업청 및 후생노동성도, “이번 보험법의 제정에 의해서 공제에 대한 감독과 조직의 변경은 없다.”¹²⁾라고 하고 있다.

3. 고지의무

상법은 제644조, 645조, 678조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의 대상을 “중요한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사실인가는 보험계약자가 판단해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법은 이러한 규정을 고지의무대상을 “중요한 사실중 보험자가 되는 자가 고지를 요구한 것”으로 하고(제4조, 제37조, 제66조), 보험자가 중요한 고지사항을 지정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질문하고, 보험계약자 등은 이것에 답변을 하면 충분한 것으로 하고 있다. 즉, 고지의무가 이른바 “자발적 신고의무”에서 “질문대응의무”로 변경되었다.¹³⁾

또한,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과 동일하게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롭게 보험계약의 체결매개자(생명보험의 모집인 등)이 고지의무방해나 告知教唆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8조2항2호·3호·3항, 제55조2항2호·3호·3항 등).

해제의 효과에 관해 중간시안의 단계에서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보험금이 감액되는 방식의 채택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상법과 마찬가지로 All or Nothing 주의를 유지하고 되었다고 한다.¹⁴⁾

보험계약자의 고지사항과 관련하여,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지적에 대해, 법무성은 “어떠한 사실이 위험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을지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이것을 열거하는 것은 곤란하며 중요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전부 게재하는 것은 어렵다.”¹⁵⁾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부당한 보험금의 지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기 쉽게 필요사항을 명확히 한 고지의무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한다.¹⁶⁾

*** -----

12) 第169回 国会衆議院法務委員會議録, 第11号, (2008. 4. 25), 9頁

13) 菱沼誠一, 전계논문

14) 萩本 修, 전계논문, 29頁

15) 第169回 国会衆議院法務委員會議録, 第11号, (2008. 4. 25), 6頁

16) 菱沼誠一, 전계논문



4. 보험금부의 이행기

최근의 보험금미지급문제의 영향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보험법부회에서 보험금부청구자의 신속한 보험금부를 받을 이익과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금부청구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보험자의 조사권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집약이 난항을 겪었으며, 국회의 심의에서도 이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고 한다.¹⁷⁾

보험금부의 이행기에 관해서는 보험법 제21조 제1항(제52조제1항, 제81조제1항도 같다)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만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보험금의 지불지체에 대한 위험 등으로 인해 금부의 이행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강하지만, 법무성은 “개별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숫자로써 정할 수는 없었다. 개별의 계약마다 판단된다”¹⁸⁾라고 답변하고 있다.

총래의 약관에서는, 청구일로부터 일정한 일수(생명보험은 5일, 손해보험은 30일이 일반적이다)이내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가 종료하는 때에 지불한다는 약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그 약관규정의 후단부분은

불명확하고, 이행기를 연장하는 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¹⁹⁾라고 하고 있다.

보험금부와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수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5일이내,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보험금부의 이행기가, 부당하게 늘어나서는 안 되며, 금융청 및 법무성에 의한 충분한 감시가 요구된다는 의견²⁰⁾도 있으며, 이에 반해, 보험금부를 해야만 하는 경우인가 아닌가의 조사는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서 필요한 면이 있고, 5일이나 30일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은 다소 유연하지 못한 해결이라는 견해²¹⁾도 있다.

5.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법은 먼저,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제에 대해서, 언제라도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정함(제27조, 제54조, 제83조)과 동시에 피보험자에 의한 해제청구가 있었던 경우의 해제권(제34조2항, 제58조2항, 제87조2항),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의 해제권(제96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자에 의한 해제로써,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제(제28조, 제55조, 제84조), 위험증가

*** -----

17) 山下友信, 전계논문, 16頁

18) 第169回 国会参议院法務委録, 第11号, (2008. 5. 22), 3頁

19) 最判平成9・3・25, 民集51卷3号, 1565頁

20) 菱沼誠一, 전계논문

21) 山下友信, 전계논문, 16頁

의 통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제(제29조, 제56조, 제85조), 중대사유에 의한 해제(제30조, 제57조, 제86조)를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유에 의한 해제는 지금까지는 Moral Risk대책으로써 약관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중대사유해제권의 요건(제30조 등)과 효과(제31조1항·2항3호, 제59조1항·2항3호, 제88조1항·2항3호)가 명문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이러한 보험법안 제30조(중대사유에 의한 해제)와 관련해서 “전2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당해손해보험계약의 존속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사유”라는 규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남용의 방지가 문제가 되었었지만, 그 점에 관해 법무성은 “同호는 제1호, 제2호에 비견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으므로 남용적위험은 있을 수 없다”²³⁾라고 하고 있다.

6. 선취특권과 개입권

상법에는 책임보험계약(예를 들어 PL보험 등)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액에 따른 按分辨濟 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책임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부는, 본래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쓰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채권자가 보험금부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²⁴⁾

따라서 보험법은, 책임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부청구권에 대해서 피해자가 법률상 우선하도록 하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도산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험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특별한 선취특권(先取特權)을 부여했다(제22조1항).

또한, 보험법은 보험계약자의 압류채권자, 파산관재인 등이 사망보험계약 또는 상해질병보험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해제의 효력이 보험자가 그 해제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보험금수취인 중,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의 해제통지의 날에 보험자가 해제권에 대해서 지불해야만 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상기의 해제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했다(제60조, 제89조). 이것이 이른바 개입권이라 불리우는 규정이다.

*** -----

22) 州崎博史, 保険契約の成立および終了, 『Jurist』No.1364, 有斐閣, 2008.10.1, 31頁

23) 第169回 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會議録, 第13号, (2008. 5. 29), 6頁

24) 萩本 修, 전계논문, 33頁



7.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수취인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규정의 정비

제42조는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보험수취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과 동시에, 그 보험수취인이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누린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하며,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²⁵⁾

대부분 장기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금수취인변경권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다. 대부분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이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큰 불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43조1항은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다른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생명보험금수취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나 新舊의 보험금수취인의 동의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해서 보험금수취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보험자이고(제43조2항, 제72조2항), 보험자에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만, 보험금수취인의 변경은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3조3항, 제72조3항).

유언에 의한 보험금수취인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일방적의사표시인 점이 문제가 됨과 동시에, 보험금수취인의 변경이 유언사항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⁶⁾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법은 제44조와 제73조에서 유언에 의해서 보험금수취인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유언에 의한 보험금수취인변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8.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규칙

타인의 생명에 걸린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보험법안 제38조에서도 명확한 것이고, 법무성도 단체생명보험에서 “회사측이 종업원에게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보험금이 어떻게 지불되는가도 잘 알지 못한 채 강제로 계약을 시킨 경우에는 진의에 근거한 동의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²⁷⁾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Human value특약(임원이나 종업원이 사망한 때 기업의 경제적손실보상을 위해서 기업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결여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²⁸⁾라고 하면서도 단체생명보험에 대해

*** -----

25) たけはまおさむ, “生命保険契約および障害疾病保参契約特有の事項”, 『Jurist』No.1364, 有斐閣, 2008.10.1, 42頁

26) たけはまおさむ, “生命保険契約および障害疾病保参契約特有の事項”, 『Jurist』No.1364, 有斐閣, 2008.10.1, 44頁

27) 第169回 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會議録, 第11号, (2008. 5. 22), 29頁

28) 第169回 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會議録, 第13号, (2008. 5. 29), 15頁

서는, 법무대신자신이 “특히 금융청이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주었으면 한다”²⁹⁾라고 답변하고 있는 등 금융청에 의한 현재의 감독체제가 정말로 충분한 것일까라는 의문도 남아있다.

이전부터, 단체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회사에 의한 보험금의 수취자체를 금지한다든가, 피보험자증의 발행을 의무로 해야만 한다”³⁰⁾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단체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의 충분한 설명과 종업원의 진의에 근거한 동의의 확보에 대해서 한층 더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³¹⁾

9. 보험금 미지급문제

2005년 10월에 드러난 이른바, 보험금의 미지급문제의 원인 및 재발방지책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큰 논점의 하나가 되었다.

그 점에 대해, 금융청은 “생명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의 지불누락은 2007년 6월말까지 약131만건, 총액 약 964억엔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약 50만건, 총382억엔이다. 금융청으로서도 이들 각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 업무의 개선을 촉구하여 왔으며 계속해서 적시에 적절

한 보험금의 지급이 되도록 업무개선을 위한 방안을 촉구할 것이다”³²⁾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兩법률안과 보험금미지급문제의 관계에 대해서, 법무성은 “보험법의 재검토작업은, 보험금의 미지급문제를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미지급문제에 충분한 배려를 함으로써 적절한 계약구정을 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³³⁾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미지급문제가 생겨난 배경에는, 금융상품의 자유화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충분한 주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³⁴⁾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게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포함한 업무개선을 위한 대처와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이 요구될 것이다.

10. 앞으로의 과제

법안에 담겨지지 않았던 과제로서는 현물급부, 미성년자의 보험 등이 있다.

우선, 생명보험계약 및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

*** -----

29) 第169回 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会議録, 第13号, (2008. 5. 29), 16頁

30) 本間照光, “私の視点「団本生命保険会社受け取り, 法で禁止を」”, 『朝日新聞』, (2008. 4. 9)

31) 菱沼誠一, 전개논문

32) 第169回 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会議録, 第13号, (2008. 5. 29), 7頁. 또한, 보험금미지급문제의 전반에 관해서는, 井上凉子, “生損保業界における保険金不払問題”, 「立法と調査」, 第274号, 参议院事務局, 2007. 4., 39頁~ 46頁

33) 第169回 国会衆議院法務委員会会議録, 第8号, (2008. 4. 15), 3頁

34) 加藤由孝, “保険金不払い問題に関する一考察”, 「名城論叢」, 第8巻第4号, 名城大学経済・経営学会, 2008. 3., 188頁 以下



에서 금전 이외의 급부(현물급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간호서비스의 제공 등 금전급부이외의 방법에 의한 급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제로 한 법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법무성은 “장기간의 간호와 같은 현물급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감독이 정비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고 감독행정이 조금 더 확보되고 나서 시행되는 편이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³⁵⁾라고 해서 현물급부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류하였다. 또한 외국의 법제에서도 독일의 경우 현물급부도 가능하다는 문언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의 보험법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의 현물급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미성년자의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이것을 금지한다든가 일정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예가 많고, 보험범죄방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소비자의 수요의 존재와 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곤란함을 이유로 계약법에서 규율을 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보류했다. 법무성도 “계약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실무상으로도 보험

자가 보험금의 액수를 포함한 다양한 사정을 감안함으로써 Moral risk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³⁶⁾라고 하고 있다. 이들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마치며

보험법 및 동법정비법의 성립으로 각 보험회사는 약관의 구체적인 개정을 검토 중일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법 제21조제1항의 「상당의 기간」이나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범위 등의 해석을 시작으로 약관의 문면은 물론 그 운용 등에서도 개정의 취지인 이용자(소비자)의 보호가 한층 철저해질 것이다. 따라서 금융청 및 법무성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동시에 위원회 심의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단체생명보험의 실태에 대해서도 종업원의 동의의 확보의 실효성 등에 관해서 금융청 등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³⁷⁾

김 경 석

(일본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35) 第169回 国会衆議院法務委員會議録, 第8号, (2008. 4. 15), 8頁

36) 第169回 国会衆議院法務委員會議録, 第8号, (2008. 4. 15), 10頁

37) 菱沼誠一, 전계논문